

「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
동의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6년 1월 5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6년 1월 6일

라. 상정일자: 2026년 1월 19일

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경제국장 김 영 철

나. 제안이유

- 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은 성장주도형 선도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
-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1) 사무명 : 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

2) 추진근거 및 필요성

가) 추진근거

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(2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
(3)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조례」 제8조, 제9조

(4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나) 필요성 : 기업 발굴, 선정, 사업관리, 컨설팅, 상담 등을 위해 축적된 기업지원사업의 경험과 기업·전문가 네트워크가 있고,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에 위탁 필요

3) 위탁 사무 내용 : 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업무 전반

가) 사업세부계획 수립 및 선정평가위원회 구성·평가, 선도기업 선정

나) 과제 추진현황 수시 점검, 기업 애로사항 해결지원 및 연계지원 발굴·매칭

다) 기업 컨설팅 실시, 수행기업 결과 평가 등

4) 위탁시설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) : 해당없음

5) 위탁기간 : 2026. 2. ~ 12.

6)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300백만원(시비)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간접비	사업비	비고
300	60	30	210	

- 7)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(25.12.26)
- 8) 위탁구분 : 재계약 (수탁기관 : 구미전자정보기술원)
- 9) 부서의견 : 기업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 -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 -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조례」 제8조, 제9조
 -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-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-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
 - : 적정(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)
-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, 감사결과
 - :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(관련 조례 2026. 1. 1. 시행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- 본 동의안은
 - 지역 산업을 이끄는 미래 월드클래스 성장 가능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획 및 운영 등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중소·중견기업을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특히, 본 사업은 선도기업의 기술력 평가, 성장 전략 수립, 애로사항 해결, 성과 관리 등 전문성과 기업 현장 이해도가 동시에 요구되는 사업으로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한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수탁기관으로 적합할 것으로 보임.
- 다만, 기업 선정, 기업별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 매칭을 통한 산업·경제 동향 정보 제공, 신사업 아이템 발굴 및 기업 애로 해결 등의 주요 사업 내용이 「허리기업 성장 레벨업 1+1 지원사업」 위탁 동의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.
- 지원사업 간 대상,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식에 있어서 명확한 차별화를 통해 중소·중견기업의 특성과 성장 단계에 부합하는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, 향후 유사한 동의안 제출 시에는 사업 간 차별성과 목적의 명확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